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1. 1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월 13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2호~제20호)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22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1년도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제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22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1년도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제1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호 『(주)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문구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3.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내용

○ (위원) 청약철회권 적용대상 관련하여 고난도 얘기가 나오는데 고난도의 개념은 어디에서 분명하게 정의되고 있는지? 전에 사모펀드 때 고난도 개념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개념이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규정에서 정할 것인지?

○ (보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고난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품을 지칭하는 것임.

○ (위원) 그러면 인용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인용되는 것임.

○ (위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정될 때까지 잘
마쳐주시고 의견도 잘 청취해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호 『(주)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호 『(주)아라에이엠씨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 제7호 『에스비자산관리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 제8호 『엔피엘홀딩스자산관리대부(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9호 『(주)피앤씨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부문검
사 결과 조치안』, 제10호 『(주)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에 대한 부
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1호 『명헌건설(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2호 『(주)미전개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 제13호 『(주)우드랜드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 제14호 『(주)이화에이엠씨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 제15호 『(유)주현개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6호 『에스디산업(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 등 12개 대부업자가 총자산한도를
위반하여 영업전부정지를 처분하는 내용

○ (위원) 검사기간이 언제였는지?

○ (보고자)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면검사를 진행함. 그리

고 2019년 7월에 추가적인 부분을 현장점검하여 최종적으로
검사가 종료된 것은 2019년 7월임.

- (위원) 지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이 위반내용과 관련하여
경미한 내용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서 논의를 함. 그 뒤
에 이 중에서 3개사가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함. 진술서를
읽어보니, 총자산한도 관련해서 대부업체들을 처음으로 제
재조치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보통 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나 기관경고의 단계별로 진행한 다음에 영업정지를 두고 있
기 때문임. 그런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일부가
아니고 전부영업정지 형태로 들어가서 바로 6개월, 감경을
할 경우에 3개월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음. 과연 과거의 총
자산한도 위반 자체를 가지고, 이후에 총자산비율은 다 시
정되어서 현재는 10배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함. 진술은 3개사가 했지만 엔피엘홀딩스자산관리대부(유)
와 (주)피앤씨인베스트먼트대부의 경우는 금감원 판단 시에도
경미하다고 봐서 2분의 1을 경감한 내용임. 직접적으로 수
치를 보면 그 당시 2017년말, 2018년말에 10.1배, 10.2배로
초과했음. 그런데 서면진술한 것을 보면 회계처리 잘못 때
문에 9.9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나중에 회계결산을 완료하
고 나니까 10.2배가 되었다고 적혀있음. 그런 기술적인 오류
가 있었으며, 현재는 시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2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임. 대부업법 제10조제7항과 제7조의3에 보면 총
자산한도를 위배했을 때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

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독당국에 재량이 있다고 여겨짐. 그 재량이라는 것은 위반한 내용의 경중임. 경중 조항을 생각해본다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도 법적용을 전제로 2분의 1을 경감하는 방식보다는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의견진술한 것만 재검토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첫 조치이니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과 원천적으로 재량을 발휘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구분해서 차기 회의에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함.

- (보고자)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함. 그런데 대부업법 관련해서 2016년 7월에 금감원의 감독·검사 권한이 생기면서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다 일괄적으로 넘어오게 됨. 이 업체들에 대해서 총자산한도 위반은, 대부분 2017년도가 주 위반사항인데 2017년 7월 이전부터 공문을 보내서 10배가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산을 줄이고 자본금 증자를 하라는 지도를 여러 차례 함. 그리고 사실 총자산한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적시에 바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업체가 총 1,000개가 됨. 1,000개 중에 외부감사 등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음.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의 총자산한도 위반을 산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 자체가,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월 말에 국세청에 세무신고가 끝난 다음에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징구해서 전부 다 조사하게 됨. 그때 자료수집 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서 실제로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는 기간만
도 최소한 5~6개월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다시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를 넘어가
기까지 통상 당해년도에 대한 내용을 적시성 있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량권
은 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문구가 있는데 별표에 그렇게 규정을 정한 것으
로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이전에 금융위
에서 '지자체가 이런 경미한 사항도 조치를 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나왔을 때 조치를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서도 상
당히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간 사례도 있어서 일부 비율이 경미하거나 이런
것은 감경요소로 반영하게 된 것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
리면 사실 이 업체들 대부분이 채권추심업체들임. 현재 12
개 업체들 중에서 금전대부업을 주로 하는 업체는 몇 개 되
지 않고, 금전대부를 한 인원이 5명을 넘어가는 업체가 2개
사 밖에 되지 않음. 여기는 주로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타
대부업체 등에서 채권을 사와서 채권추심을 주로 하는 업체
들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다 거액의 부동산담보대출
을 하는 곳임. 예를 들어 2개사 자체에 전체 채권금액 명수,
그러니까 대부를 해준 사람이 67명에 한 280억 원 정도 됨.
대부분 소액의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대출을 주로 하는 곳임. 이 검사를 하면서 위
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총자산한도를 지키라고 공문을 수차례 내보내도 지키지를
않음. 제한된 인력 10명으로 1,000개를 검사한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종합검사로 들어가면 26년이나 30년에 한 번씩 검
사를 받게 되는 것임. 사실 지난 연말에 200여개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했을 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 대부업계에서 예전에는 사소한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음. 압박해서 총자산한도를 지키라고 하면 업체 쪽에서 증자할 시간이 없을까봐 8월, 9월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signal)를 주고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임.

- (위원) 내용이 경미한 부분도 있고 재량의 여지도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했는지?
- (보고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음. 여기에 보면 주로 2017년이 위반기간인데 2016년인 업체는 2016년에 금감원에 들어왔다가 2017년에 본인들이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추심업을 업무 범위를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갔다가 다시 재산을 늘리면서 2018년에 금감원에 다시 들어오게 된 내용임.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금융위에 상정하기로 결정이 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취지임. 지금 올라온 안전에서 업

무정지 6개월이 예정된 (주)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와 (주)아라에 이엠씨대부에 대해서는 전혀 두둔할 생각이 없음. 그런데 나머지 경미에 해당하는 부분들, 지난 안전검토소위원회 때도 언급한 것처럼 무엇이 '경미'인지 기준이 없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금감원 실무진이 이번 제재를 위해서 만든 기준, 11배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라든지, 소비자 피해가 적다든지, 손실된 자본감소로 불가피하게 한도가 초과했다든지, 검사착수 이전에 자진시정을 했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 것은 있음. 그런데 진술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추가적으로 참작할 여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항을 재량이 없는 무조건 기속조항으로 봐서 기관경고나 주의의 단계 없이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됨. 그렇다고 하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만 재검토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과 함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치하자는 것임. 다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량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니까 적용과 비적용을 구분해보는 검토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 검토를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각자 다음 정례회까지 2주 동안 생각하자는 것인지?
- (위원) 금감원과 실무과로 일단 내려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검토소위원회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 논의하는 것임.
- (위원) 금감원 국장님은 바꾸실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함.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례를 만드는 것임. 금감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선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선례를 엄격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로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례를 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더 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현재 제재의 기준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재기준도 세분화하여 일정한 경우에 충분히 감경할 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도 진행했으면 좋겠음.
- (위원)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조치를 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움. 그런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다음에 조치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음.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음.
- (위원) 조치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금감원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공문조치 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해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이것을 2주 늦춰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 (보고자) 2주 늦춰도 문제되는 것은 아님. 그런데 금감원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이 업체들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전에 갑자기 채권추심 잔액을 늘리거나 이런 행태를 계속함. (주)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 같은 경우도 2020년 상반기에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130억 원을 차입해서 매입채권 107억원을 늘려버림. 이미 이 업체들한테 사전통지도 다 나가고 그 기간도 상당부분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업정지에 관한 조치를 신속하게 내렸으면 하는 의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오늘 결정되면 좋긴 하나, 다음 회의가 2주 뒤이니, 2주 뒤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고민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는지?
- (위원) 다른 위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금감원 국장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이 바뀔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하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면 여러 가지 채권추심의 문제라든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음. 결국 그것이 소비자보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늘 의결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 (위원) 이것을 안전별로 나눠서 일부는 원안의결, 일부는 보류를 할 수 있는지?

- (위원)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대상은 경미로 해서 영업 정지 6개월을 2분의 1로 경감한 업체들임. 재량조항을 재량이 없는 것으로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 6개월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령을 적용해서 2분의 1을 감경하는 방식에 대해 재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주)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와 (주)아라에이엠씨대부는 위반형식이나 위반의 중한 상태가 높기 때문에 그냥 적용해도 무방함. 경미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만든 기준임. 그리고 거기에 보면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한 부분들은 오늘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음. 다만, 안전 제7호~제16호까지의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임. 그것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임.
- (위원) 첫 번째로 실무적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위반 정도가 중한 2곳은 오늘 결정하고 나머지 경미하다고 판단한 곳들은 경계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3가지 선택이 있음. 실무자들은 1번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3번으로 분리해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 (보고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음. 기존에 모든 법령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재량권 조항은 당연히 있음. 그런데 10.1배, 10.2배 이렇게 경미한 내용은 그동안에는 법 위반사항 자체로는 위반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양정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000개씩 되는 것을 자주 검사할 수도 없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49개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 전부 제재가 다른 것보다 아주 세게 되어 있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위반이어도 경미하여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고민할 수는 있는데 면제를 한다면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대부업자한테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음. 현행 법령상 대형금융회사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오지만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재를 받은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음.

- (위원)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음. 전부를 다음 회차에 의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알고 있고 더 위험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오늘 결정을 하고 조금 경미한 곳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좋을지?
- (보고자) 실무진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다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경사유가 전혀 없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실무과와 검토해 보겠음.
- (위원) 규율(discipline)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2개 업체가 업무정지 6개월 조치가 되는 것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하는 것인데 영업정지와 아닌 것, 그리고 기관경고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 사항인지?

- (보고자) 그러함. 시행령 상에 각각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내용이 전부 다 정해져 있음.
-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도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실제로 따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징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은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지?
- (보고자)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이 말씀드리자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같은 경우에는 법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임. 대부업법 개정할 것이 꽤 여러 개 있어서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위원) 그러면 아까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이라는 것이 특히 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데 기관경고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실제로 영업정지를 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영업정지는 한편으로는 이용자 문제도 있으니 영업정지도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그래서 대부업법 개정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보시고 2주 후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논의하겠음.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단, 제5호 및 제6호는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호 『투에스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에스대부(주)가 연체이자율 상한 등을 위반하였으나, 폐업상태임을 감안하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을 통보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호 『(주)시소플랫폼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시소플랫폼대부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영업전부 정지를 처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호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 주식회사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위원) IMC증권이 시장조성업무를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요즘 공매도 관련해서 시장조성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그러나 3년 반 만에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오는 것이므로 금융중심지 추진차원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사실이지만 금융중심지를 추진하는데 참가자가 늘어난 만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이해상충방지체계로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가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될는지?

○ (보고자) 이 회사는 아직 예비인가단계이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출 요건은 없음. 일단 사업계획심사 위주로 예비인가는 진행되고 향후에 본인가 진행 시에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및 관련 물적설비 구축까지 확인해서 본인가 신청을 진행하게 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호 『에스케이증권(주)의 (주)피티알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스케이증권(주)이 (주)피티알자산운용의 지분취득을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호 『디비금융투자(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디비금융투자(주)가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전에 인수증권 매매도를 약정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불건

전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4월 사모펀드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호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10월 의결한 경영개선계획 재제출 명령에 의거하여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호 『KB금융지주(주)의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금융지주(주)의 J Fintech Co. Ltd에 대한 손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호 『메트로은행 부산지점 폐쇄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트로은행의 부산지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한 대로 인가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여기 보니까 적자가 몇 년 지속되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반드시 퇴출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주로 필리핀 노동자의 개인송금업무에 주력을 해왔으나, 최근에 송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메트로은행 지점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다보니까 주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어서 2019년부터 적자가 지속되어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호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건의희의 상속자 홍라희 등이 신청한 삼성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호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요건을 개선하고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공동유대가 확대되면 신탁들의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영업구역이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신탁 간 과당경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개연성도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음.
- (보고자) 현재 신탁중앙회 내규를 통해서 공동유대구역이 확대될 경우 지점을 설치하는 두 조합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 정도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만, 이 조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유대구역이 전부 확대됐을 때 과당경쟁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거액 여신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된 규제를 새로 마련해서 여신에 대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위원) 공동유대 확대 문제도 그렇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하는 것도 다 대출의 증가를 다소 촉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임. 다만, 이것이 상호금융이니까 희망하건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영업구역이나 한도를 늘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의 확대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궁금함. 분명히 대출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음. 대출의 확대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보고자) 상호금융업권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다른 업역이나 직역 또는 지역과 관련해서 어느 한 부

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쪽에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여 같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과당경쟁이나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 (보고자)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해 주는 방안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CD지표물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MMF 동일인 자산 취득한도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CD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CD지표물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시 CD지표물에 대한 가중치를 기타물에 비해 높이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호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6분 폐회)